

## 매립지등 관리·처분계획 공고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새만금 신시·야미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관리·처분계획이 변경 승인[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4035(2021.11.16.)회]되어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및 「매립지등의 관리·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1. 관리·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

○ (당초) 20필지 1,930,000㎡ → (변경) 22필지 1,919,164㎡

구분 (소유자)	당초 면적(㎡)			변경 면적(㎡)		
	농림축산식품부	한국농어촌공사	계	농림축산식품부	한국농어촌공사	계
계	61,313	1,868,687	1,930,000	47,176	1,871,988	1,919,164
임대	34,536	1,746,704	1,781,240	47,176	1,723,228	1,770,404
매각	26,777	121,983	148,760	-	148,760	148,760

### 2. 관리·처분 대상자 결정방법

○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『새만금 신시·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』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민간투자자(새만금관광레저(주))

### 3. 관리·처분방법 및 추진 일정

- 임대토지 : 1,770,404㎡, 매각토지 : 148,760㎡
- 사업시행자와 기 체결된 토지공급(임대 및 매각)계약 변경

### 4. 기타사항

○ 매립지등의 관리·처분계획에 대한 토지지번, 면적, 도면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(조사설계부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1. 30.



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

